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37

발의연월일: 2024. 8. 2.

발 의 자:전종덕·박홍배·서미화

김남희 · 김선민 · 정혜경

송재봉 • 염태영 • 김재원

윤종오 · 송옥주 · 한창민

용혜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지만,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,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됨. 결국,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으며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어 더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되는 상황임.

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, 월 60시간 미만 초단 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고, 초단시간 노 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 려는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.

이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,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업장당연가입 근로자로 편입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를 "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

나.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정의 등) ① 이 법에서 사	제3조(정의 등) ①		
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			
다.			
1. "근로자"란 직업의 종류가	1		
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			
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			
받아 생활하는 자(법인의 이			
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			
다)를 말한다. 다만, <u>대통령령</u>	, <u>다음 각 목에 해</u>		
<u>으로 정하는 자</u> 는 제외한다.	<u>당하는 자</u>		
<u><신 설></u>	<u>가.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</u>		
	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		
	<u>로자</u>		
<u><신 설></u>	나.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		
	없는 사람		
2. ~ 19. (생 략)	2. ~ 19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